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수급자/보호자 안내용)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5년도 대비 평균 2.8% 인상

월 한도액 등급 별 한 달
(매월1일~말일)동안 재가급여
(요양,목욕,간호,주야간/단기보
호 비용합산) 이용한도 금액

급여비용 가산 야간,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가산적용 /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의 50% 가산 적용

본인부담금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2021년 변경)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2018년 1월 신설)

2026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9%	6%
30분	17,450원	2,618원	1,571원	1,047원
60분	25,320원	3,798원	2,279원	1,519원
90분	34,120원	5,118원	3,071원	2,047원
120분	43,430원	6,515원	3,909원	2,606원
150분	50,640원	7,596원	4,558원	3,038원
180분	57,020원	8,553원	5,132원	3,421원
210분	63,530원	9,530원	5,718원	3,812원
240분	70,080원	10,512원	6,307원	4,205원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등급	월한도액	1일가능 시간	월 최대 서비스 가능 일 수
1등급	2,512,900원	최대 4시간(240분) 70,080원	36일
2등급	2,331,200원		33일
3등급	1,528,200원	최대 3시간(180분) 57,020원	26일
4등급	1,409,700원		24일
5등급	1,208,900원	최소 2시간 ~ 최대 3시간	21일
인지지원 등급	676,320원	주야간 보호센터만 이용가능 (방문요양 이용 불가)	

※ 1·2등급-월 8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2024년 6회→8회 변경)

※ 3·4등급-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시간 연장은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